

1. 개정 이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2023.3.21.)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시행규칙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병설 비회원제 골프장의 준공기한 연기사유서 제출(제11조) : 삭제
- 나. 조성비 관리기관으로 ‘한국골프장경영협회’ 지정, 예치금액 5억원으로 규정, 예치기한 연기시 연기사유서 제출(제12조) : 삭제
- 다. 조성비법인의 설립시기, 종류, 예치자의 범위, 조성비법인이 설치하려는 비회원제 골프장의 입지, 규모, 이용료, 이용방법 등(제13조) : 삭제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생략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0. 00. ~ 0.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해당사항 없음

문화체육관광부령 제 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비회원제 골프장의 병설기한 연기), 제12조(비회원제 골프장 조성비의 예치방법), 제13조(비회원제 골프장 조성비의 사용방법 등)을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1조(비회원제 골프장의 병설기한 연기) 영 제13조제2호 단서에 따라 비회원제 골프장의 준공기한을 연기하려는 자는 그 연기사유서를 회원제 골프장업 등록신청 시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삭 제>
제12조(비회원제 골프장 조성비의 예치방법) ① 영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비회원제 골프장 조성비의 관리기관”이란 법 제3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골프장경영협회를 말한다.	<삭 제>
② 영 제14조제1항제1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5억원을 말한다.	
③ 영 제14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비회원제 골프장 조성비의 예치기한을 연기하려는 자는 그 연기사유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제2차분의 비회원제 골프장 조성비 예치기한 연기 : 제1차 회원모집계획서 제출 시
 2. 제3차분의 비회원제 골프장 조성비 예치기한 연기 : 회원제 골프장업 등록신청 시
 - ④ 영 제14조제1항제2호 단서에
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금융기관의 일반 대출금리를 고려하여 정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 제13조(비회원제 골프장 조성비의 사용방법 등) ① 법 제15조제1항 및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법인을 설립하려는 예치자는 법인의 설립시기 및 종류와 그 법인에 참여하는 예치자의 범위 등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그 기준은 비회원제 골프장 조성비 예치금액의 규모를 고려하여 정한다.
- ② 영 제15조제3항에 따른 비회원제 골프장 조성비의 사용계

<삭 제>

획서 등의 제출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회원제 골프장 조성비의 사업계획서 : 영 제15조제2항에 따른 비회원제 골프장 조성비의 이관 요청 시
 2.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 매년 12월 15일까지
 3. 잉여금처분계획서 : 매년 2월 말까지
- ③ 영 제15조제5항에 따라 제1항의 법인이 지켜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회원제 골프장의 설치 장소 교통, 입지여건, 지역 간 균형 개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반인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지역에 설치하되, 특정 지역에 편중되어서는 안 된다.
 2. 비회원제 골프장의 설치 규모 비회원제 골프장 조성비의 예치금액과 설치 장소 등을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3. 비회원제 골프장의 이용료 설치 장소, 설치 규모 및 다른 비

회원제 골프장의 이용료 등을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이용료를 받아야 한다.

4. 비회원제 골프장의 이용방법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용자의 예약 순서에 따르되, 예약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도착 순서에 따라 골프장을 이용하게 해야 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	
연 락 처	(044) 203 - 3156